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- 가. 발 의 자 : 문영민 의원 (찬성자 27명)
- 나. 의안번호 : 제 2774 호
- 다. 발의일자 : 2021. 10. 1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0. 20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도는 도로(차도·보도)와 도로시설물로 구분하여 관리기관과 청소업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의 청소업무에 대한 담당기관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바, 도로의 차도·보도에 도로시설물 내 차도·보도를 포함토록 하여 서울특별시의 도로 청소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,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지하도로의 낮은 시인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터널·지하차도를 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하는 도로사업소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도로의 정의에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

도로시설물을 포함토록 함. (안 제3조제1호)

나. 낙하물 처리를 포함한 차도·보도의 청소는 자치구청장이 하되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는 제외토록 함. (별표 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도로교통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도로의 정의에 ‘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’을 포함토록 하고, 효율적인 터널·지하차도의 관리를 위해 차도·보도의 청소 중 터널·지하차도의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 업무의 관리자를 자치구청장에서 서울시 도로사업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대상) (생략)	제2조(적용대상) (현행과 같음)
1. <u>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</u>	1. <u>도로</u>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정의) (생략)	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u>	1. <u>“도로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(도로시설물 내 차도와 보도 포함), 도로시설물을 말한다.</u>
2. <u>“도로(차도·보도)”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,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.</u>	2. <u>“도로시설물”이란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.</u>
3. ~ 18. (생략)	3. ~ 18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① (생략)	제4조(총괄관리자 지정) (현행과 같음)
1. 안전총괄실장 : <u>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, 공동구,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(하천구역 및 하천시설), 하수도, 그 밖의 도로부속물, 도로기능 하천복개구조물</u>	1. ----- <u>도로, 공동구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기후환경본부장 : <u>도로(차도·보도)의 청</u>	3. ----- <u>차도·보도</u> -----

소(낙하물 포함)

4. ~ 5. (생략)

제2장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·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로시설물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·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자는 도로(차도·보도)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바로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·보강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·도로시설물·도로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·교통관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고장·파손,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고포상금은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가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.

<부칙신설>

4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2장 도로

제15조(보수·정비 등의 실시) ① ----- 도로-----

-----.

② ----- 도로-----
-----도로-----

-----.

제48조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도로

-----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			[별표 1] 주요시설물 관리기관(제5조 관련)				
구	분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	구	분	시설물유지관리 내역	관리자
도로 (차도·보도) 및 도로 시설물	서울 특별시 도	(생략)	자치구 청장	도로	서울 특별시 도	(현행과 같음)	--
		(생략)				(현행과 같음)	
		○ 보도관리(측구,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)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				○ ----- ----- ----- ○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은 제외)	
		(생략)				(현행과 같음)	
(생략)			(현행과 같음)				

- 먼저, 안 제3조제1호는 현행 제3조제2호의 ‘차도와 보도’로 정의되고 있는 ‘도로’에 도로시설물을 추가하는 한편, ‘차도와 보도’에는 ‘도로시설물의 차도와 보도’를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.
- 여기서 현행 ‘도로’의 정의에 도로시설물을 새로이 추가하려는 것은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제2조1)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)에서 ‘도로’를 차도, 보도 외에도 안 제3조제2호의 도로시설물에 정의되어 있는 교량·터널·고가차도·입체교차 및 지하차도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됨.

- 1) 「도로법」 제2조(정의) 1. “도로”란 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- 2)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조(도로) 「도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.
 1. 차도·보도·자전거도로 및 측도
 2. 터널·교량·지하도 및 육교(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)
 3. 궤도
 4. 옹벽·배수로·길도랑·지하통로 및 무덤기시설
 5.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

- 또한 ‘차도와 보도’에 ‘도로시설물의 차도와 보도’를 포함하려는 사항은 현행도 포함하여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음으로, 개정안 별표1(주요시설물 관리기관)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이 관리자로 되어 있는 ‘차도 및 보도의 청소’에 낙하물을 포함하되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을 제외토록 단서를 변경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에 따라 도로를 비롯한 주요시설물은 시설물별로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와 도로시설물은 안전총괄실장을 관리자로, 차도 및 보도의 청소(낙하물 포함)는 자치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자치구가 지하구조물인 터널과 지하차도의 도로를 청소함에 있어 노면청소차량으로 흡입이 불가능한 낙하물 처리 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안전관리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양천구의 건의에 따라,
- 지난 8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정기회의³⁾를 통해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 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의 처리를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으며, 서울시 또한 환경미화원 출입 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해당 업무의 이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임.
- 지하구조물인 터널과 지하차도는 시인성이 낮아 낙하물 인력

3)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제163차 정기회의 2021. 8. 31.

처리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터널·지하차도의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(도로사업소)가 낙하물을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장비(사인보드차)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낙하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- 참고로, 동 개정안이 2021. 10. 14.일 발의되어 10.20.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는 2022년부터 터널·지하차도 내 기계화청소가 불가능한 낙하물을 도로사업소에서 처리하고자 2022년도 예산(안)의 ‘도로시설물(터널, 복개, 지하차도, 세척) 일상유지보수’ 사업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.